

서울특별시의회  
제334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 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제 안 설 명**



2026. 3.

서울특별시의회  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□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

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,

본 조례는 영구임대주택 및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

서울특별시 내의 해당 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

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

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

목적으로 하여 시행 중입니다.

□ 다만,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주자의

거주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,

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

근거 조항을 마련하고,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주체 확대 및

형평성 있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을 구축하고자

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- 이에 안 제5조의 경우,  
계획의 수립에 대한 관련 조항으로  
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, 자원 확보 방안,  
주거복지 전문인력 및 전문상담원 양성 및 배치에 대한  
조항을 신설하였으며,
- 안 제7조의 경우,  
보건복지서비스 관리비 지원등에 대한  
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.
- 또한, 안 제9조의 경우  
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주체로서  
기존 치매노인에서, 치매노인, 장애인 및 아동으로  
확대하였으며,
- 안 제16조의 경우, 재정 지원에 있어  
타 조례 등으로 지원한 사항 및  
유사지원을 받는 경우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 관련  
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 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 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 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